

# 공 고 문

##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0 - 142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재 지정 공고합니다.

2010년 2월 10일

## 부 산 광 역 시 장

### 1. 대상지역 및 면적

-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·봉림·송정·화전·녹산·생곡·지사·미음·신호·동선·성북·눌차·천성·대항동 일원 ▷ 43.63km<sup>2</sup>

### 2. 지정기간 : 2010. 3. 1 ~ 2011. 2. 28(1년)

### 3. 허가 받아야 할 면적

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180m <sup>2</sup> 초과
	상업지역	200m <sup>2</sup> 초과
	공업지역	660m <sup>2</sup> 초과
	녹지지역	100m <sup>2</sup>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90m <sup>2</sup> 초과
도시지역 외 지역	농 지	500m <sup>2</sup> 초과
	임 야	1,000m <sup>2</sup> 초과
	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	250m <sup>2</sup> 초과